

■ 어장관리법 시행령 [별표 1] <신설 2022. 7. 5.>

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종류 및 양식방법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
방법(제12조제1항 관련)

면허의 종류	양식방법	양식환경	양식품종	시설물	주기	방법
해조류 양식업	수하식 (지주망식)	조간대	김, 매생이 등	대나무, 지주, 밧줄 등	5년	인력, 인양장비 (정화선, 굴삭기, 관리선 등)
	수하식 (부류망식)	조하대	김 등	뜸, 밧줄, 그물, 닷 등	4년	잠수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 등), 형망장비(형망선)
	수하식 (연승식)	조하대	미역, 다시마, 툇, 모자반 등	뜸, 밧줄, 닷 등	4년	
	바닥식 (투석식)	조간대	김, 파래 등	돌 등	5년	인력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, 굴삭기 등)
패류 양식업	가두리식	조하대	전복 등	뜸, 밧줄, 가두리, 그물, 닷 등	4년	잠수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 등), 펌프식 준설선 (수처리선 포함)
	수하식 (연승식)	조하대	굴, 담치, 참가리비, 해만가리비 등	뜸, 밧줄, 닷, 채롱 등	4년	잠수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 등), 형망장비(형망선)
	바닥식 (살포식)	조간대	바지락, 꼬막, 가무락, 백합, 동죽 등	모래, 대나무 등	5년	인력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, 굴삭기 등)
		조하대	바지락, 피조개, 새조개, 키조개 새꼬막 등	밧줄, 그물, 닷 등	4년	잠수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 등), 형망장비(형망선)
	바닥식	조간대	굴 등	돌 등	5년	인력, 인양장비

어류등 양식업	(투석식)					(정화선, 관리선, 굴삭기 등)
		조하대	전복 등	돌 등	5년	잠수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 등)
	가두리식	조하대	조피볼락, 돔류, 농어, 쥐치, 복어류, 능성어류, 방어, 고등어, 민어 등	뜸, बाट줄, 가두리, 그물, 땃 등	3년	잠수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 등), 펌프식 준설선 (수처리선 포함)
	수하식 (연승식)	조하대	우렁챙이, 미더덕, 오만둥이 등	뜸, 지주, बाट줄, 그물, 땃 등	4년	잠수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 등), 형망장비(형망선)
	바닥식 (투석식)	조하대	해삼 등	돌 등	5년	잠수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 등)

비 고

1. 어장청소를 실시하는 자는 양식환경(조간대, 조하대), 암반·인공어초·해저케이블 등 어장의 저질(底質)상태, 어장 인근 취수 시설, 어업활동 영위(營爲) 시기 및 시설물의 철거·이설 여건을 고려하여 어장청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.
2. 같은 면허 내에서 서로 다른 양식 방법을 혼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, 어장청소 주기는 선택 가능한 어장청소 주기 중 단기로 하고, 어장청소 방법은 해당하는 복수의 방법 중에서 비고 제1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.
3. 마을어업의 어장청소 주기는 위 표에서 정하는 어장청소 주기로 하고, 어장청소 방법은 인력, 잠수 또는 인양장비(정화선, 관리선, 굴삭기 등)로 한다. 다만, 서로 다른 양식 방법을 혼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의 어장청소 주기는 선택 가능한 어장청소 주기 중 단기로 한다.
4. 복합양식업의 어장청소 주기는 선택 가능한 어장청소 주기 중 단기로 하고, 어장청소 방법은 해당하는 복수의 방법 중에서 비고 제1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.
5. 협동양식업의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은 위 표에서 정하는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서로 다른 양식 방법을 혼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의 어장청소 주기는 선택 가능한 어장청소 주기 중 단기로 하고, 어장청소 방법은 해당하는 복수의 방법 중에서 비고 제1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.